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8

발의연월일: 2024. 7. 9.

발 의 자:김영진·백혜련·허 영

염태영 · 김준혁 · 임호선

서삼석 · 김승원 · 박희승

조승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이나 감정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9조 및 제22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저지른 19세 이상인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1.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 2.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제9조 중 "제4조제2항에"를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① 보호 관찰소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22조제2항제6호"를 "제22조제2항제6호(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22조에"를 "제22조 및 제22조의2에"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 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 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고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제4조(치료명령의 (생 략) <신 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 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 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 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 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 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u>④ 제1항 및 제3항에</u>
<u>⑤</u> ・ <u>⑥</u> (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
<u>⑦</u> 제2항 및 제3항에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u>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u>
제22조의2(거주지 지정명령의 청
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
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

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제2항 제6호의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 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치 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만.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 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 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9조(준용) ① (생 략)

②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② 제22조 및 제22조의2에----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 상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 명령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 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제22조제2항 제6호(제22조의2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준용) ① (현행과 같음)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
• 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 • 제4항제3호 • 제5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3항ㆍ제4항제3호ㆍ제5
항제3호, 제16조, 제20조제1호
및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